個人情報 紛爭調停委員會



2014. 8. 12.



目 次

- 1 個人情報侵害 被害救濟 制度 現況
- 2 個人情報紛爭調停委員會 概要
- 3 個人情報紛爭調停委員會 構成
- 4 個人情報紛爭調停委員會 & 事務局 業務
- 5 調停의 意義 & 效力
- 6 個人情報紛爭調停 節次 (1), (2)
- 7 個人情報紛爭調停委員會 通計
- 8 個人情報紛爭調停事例(類型別)

1. 個人情報侵害 被害救濟 制度 現況



정보주체



개인정보 침해신고

개인정보 분쟁조정

민사소송

- ▶제도개선 권고
- ▶행정처분 의뢰
- ▶수사 의뢰
- »관련근거(개인정보보호법 제62조)
-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사람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그 침해 사실을 신고 할 수 있다.

▶제도개선 및 손해배상 권고

- »관련근거(개인정보보호법 제40조)
- ①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.

→손해배상청구

- »관련근거(민법 제750조)
- 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
2. 個人情報紛爭調停委員會 概要

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

01

의의

- **▶** ADR(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)
 - »대체적 분쟁해결 방식
- ▶ 법원의 소송 이외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분쟁해결 방식
 - »화해, 조정, 중재 등 제3자의 관여
 - »당사자 간의 직접 협의
- »무비용, 단시간
- ▶당사자들이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모두가 Win-Win하는 결과를 목표로 함

0'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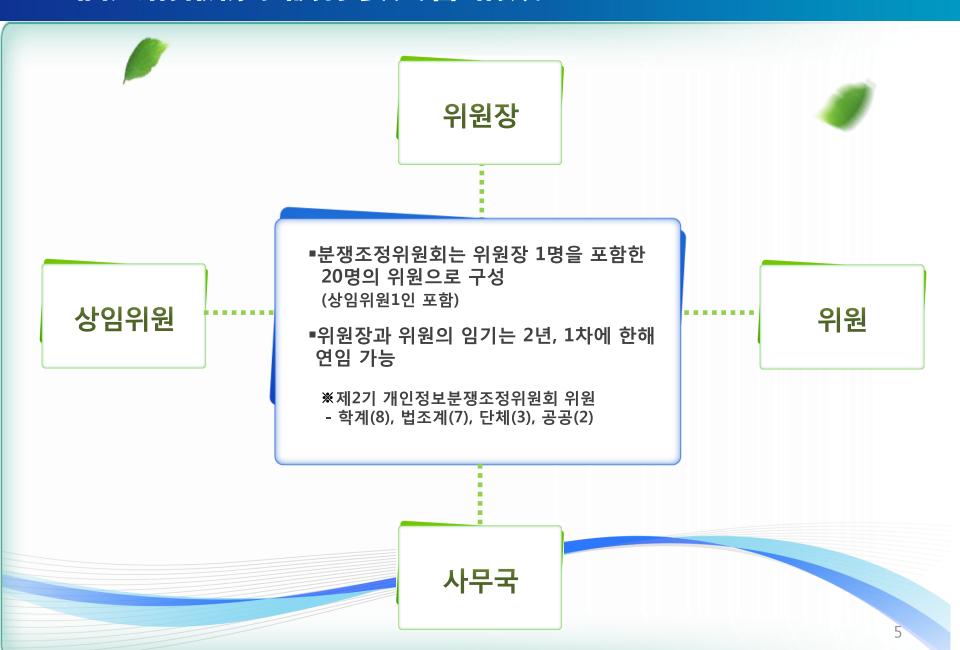
개요

- ▶(목적) 당사자간의 분쟁 사건을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해결
- ▶(성격)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위한 준사법적 심의기구
- ▶(분쟁 대상) 민간(집단분쟁 포함), 공공기관
- ▶(구성) 각 분야의 전문가 20인
- ▶(사무국) 한국인터넷진흥원(KISA)

(관련근거) 개인<u>정보보호법 제40조 제1항</u>

▶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

3. 個人情報紛爭調停委員會 構成



4. 個人情報紛爭調停委員會 & 事務局 業務

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및 사무국 업무

위원회 업무

- ▶ 조정안에 대한 심의 및 의결
- 조사 대상 침해행위의 중지
- 원상회복, 손해배상, 그밖에 필요한 구제조치
- 같거나 비슷한 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

»개인정보보호법 제47조(분쟁의 조정)

사무국 업무

- ▶ 사건 접수
- ♪ 사실조사(자료제출 요청 등)
- ▶ 보고서 및 조정안 초안 작성
- ▶ 분쟁조정 관련 사례 및 정책 연구
- 안전행정부장관은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운영등 업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지정한다.

5. 調停의 意義 & 效力

조정의 정의

▶ 분쟁 당사자 사이에 제3자가 중재하여 화해에 이르도록 함으로써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는 제도

효력의 발생

- ▶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을 양당사자가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"재판상 화해"의 효력 발생
-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
- 당사자가 결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 강제집행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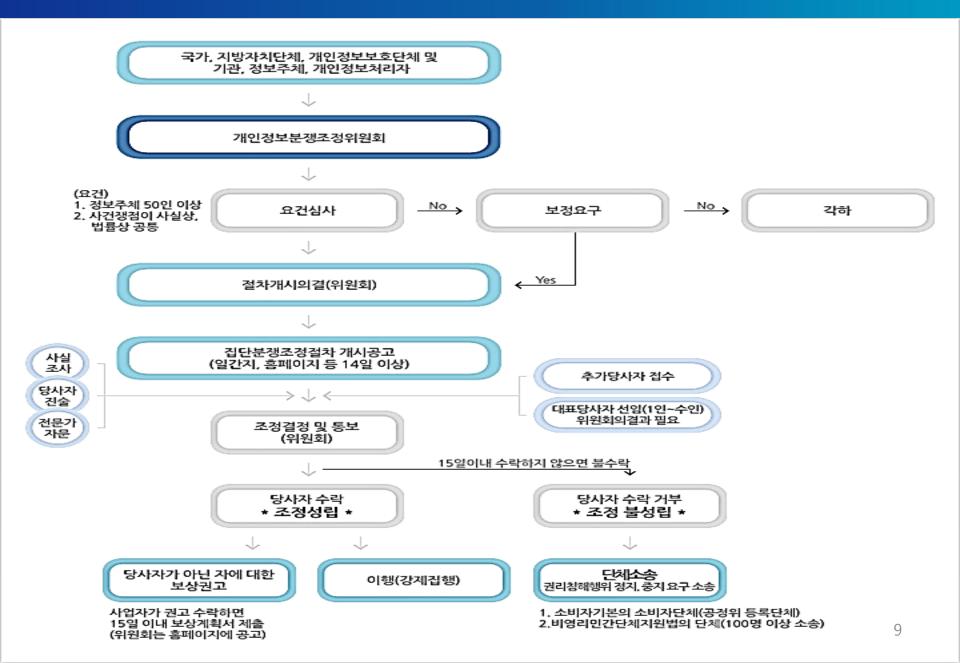
(관련근거) 개인정보보호법 제47조 제4항,제5항

- ▶ (제47조 제4항)당사자가 조정내용을 수락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,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
- ▶ (제47조 제5항)제4항에 따른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.

6. 個人情報紛爭調停節次[1][一般個人情報紛爭調停節次]



6. 個人情報紛爭調停節次[2][集團紛爭調停節次]



7. 個人情報紛爭調停委員會 通計

연도별 분쟁사건 처리 건수

(단위 : 건)

구분		2011	2012	2013	
조정 전 합의		21	32	40	
위원회 분쟁조정	인용결정	조정성립	30	29	14
		조정불성립	19	15	10
		진행중	-	_	-
	기각결정		55	20	8
	각하결정		1	1	47
합 계		126	143	173	

연도별 조정성립율(%)

	2011	2012	2013
조정 성립욜(%)	73%	80%	84%
회의 개최횟수	16회	24회	24회

▶조정 성립율(%): (조정성립 건수 + 조정전합의 건수) ÷ (조정성립 건수 + 조정불성립 건수 + 조정전합의 건수) X 100

▶한계: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성립여부가 결정되므로, 예측이 불가능

7. 個人情報紛爭調停委員會 通計

분쟁조정 침해유형별 건수

(단위 : 건)

조정신청 항목		연도별 현황		
		2012	2013	
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	12	19	21	
과도한 개인정보 수집	1	1	5	
고지, 명시한 범위를 초과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	19	76	43	
개인정보취급자에 의한 훼손, 침해 또는 누설	4	2	4	
개인정보보호 기술적, 관리적 조치 미비	76	17	26	
수집 또는 제궁받은 목적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	5	10	13	
동의철회, 열람 또는 정정요구 등 불용	2	1	13	
동의철회, 열람 또는 정정을 수집방법보다 쉽게 해야 할 조치 미이행	_	1	1	
개인정보, 사생활 침해 일반	4	5	3	
기타(개인정보취급방침 수정요청 등)	3	11	44	
합계	126	143	173	

8. 個人情報紛爭調停事例[告知範圍를超過한目的外利用]

사례

성형 전· 후 사진의 영업목적 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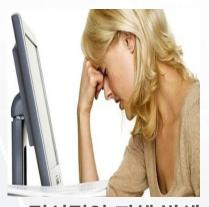












» 환자의 성형전·후 사진촬영

» 병원홍보목적 블로그 게시

» 정신적인 피해 발생



» 해당 사업자는 의료법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고 주장

위원회 결정

- ▶ 신청인의 성형 전후 사진은 '민감정보'에 해당
- 금7,000,000원 손해배상금 맟 제도개선 권고

8. 個人情報紛爭調停事例[個人情報技術的·管理的措置未備]

사례

기술적 관리적 조치 미비로 탈퇴회원에게 광고성 이메일 발송한 사건



» e-러닝 사이트가입



» e-러닝 사업자 개인정보수집



» 광고성 E-mail 발송



» 해당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고 주장

조정위원회 결정

- ▶ 개인정보악용을 통한 정신적 피해가 인정
- 금200,000원 손해배상 결정 + 제도개선 권고

8. 個人情報紛争調停事例 [明示範圍를 超過한第3者提供]

사례

본인의 명확하지 않은 동의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건

이용자



» 카드회원가입

카드사



»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전화동의요구



» 개인정보 제3자 제공



» 해당 사업자는 전화를 통해서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

조정위원회 결정

-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
- 🏲 금300,000원의 손해배상금결정 + 제도개선 권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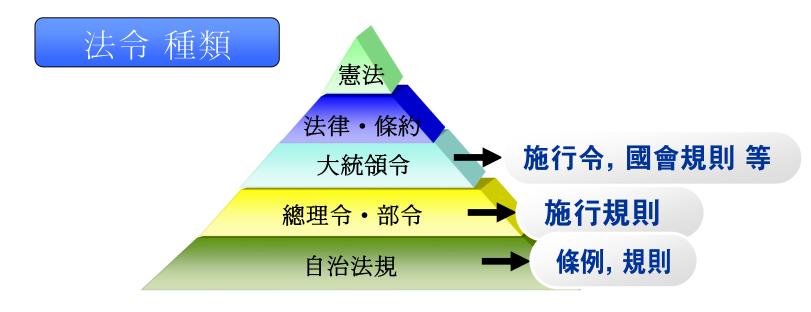
〈參考〉 韓國 法令 體系

法律案 提案權者

• 議員立法:國會議員

• 政府立法:政府





감사합니다! 謝謝!